

## 거창군 지하수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 3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0. 8. 27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정이유

- 「지하수법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  
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
-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: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나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나.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).

- 위원회 구성인원 : 7명 이내
- 위원장 : 부군수 /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의 임기 : 2년

다.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.

라.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대상과 제외대상, 산정방법,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  
(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).

마.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규정함(안 제22조, 부칙)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하수법」 제6조의2, 제7조, 제8조, 제13조, 제17조, 제18조, 제20조,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3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
-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조, 제26조의3, 제26조의4, 제27조, 제29조, 제40조, 제40조의2, 제40조의3, 제44조
-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, 제12조, 제17조
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, 제25조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
- 「지방세법」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
-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제6조, 별지 제3호서식

나. 예산조치 : 수질검사 수수료 4,800천원 확보, 그 밖에 필요한 예산은 수요 발생시 편성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10. 1. 27. ~ 2010. 2. 17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지하수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하수개발·이용자”란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·양도·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·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.
2. “지하수이용부담금”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 “유량계”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, 적산유량계·시간계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 군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2.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3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##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

제4조(설치 및 기능)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3.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4.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
2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
3.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·전문가
4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5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)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

제12조(설치)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3조(세입)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14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
2.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
3.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
4.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드는 인건비, 재료비 등의 비용
5.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,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.

제16조(관리 및 운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####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

제17조(부과·징수)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·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3.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

제18조(산정방법)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.

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)**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. 다만,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(전산용 2)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**제20조(가산금)**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**제21조(부과액 조정신청)**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